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1. 들어가며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2006년 6월 13일자로 기업회계 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동 기준서는 IFRS 2 'Share-based Payment'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번에 제정된 '주식기준보상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39-35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이하 '종전 해석'이라고 한다)와의 주요 차이점 및 새로이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준서 주요 내용

1. 용어의 변경

기준서에서는 종전 해석에서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종전 해석	기준서
주식교부형 주식매입선택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선택권)
차액보상형 주식매입선택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가차액보상권)
변동부 주식매입선택권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공정가액	공정가치
기대행사기간	기대존속기간
약정용역제공기간	가득기간

2. 적용 범위

기준(해석)의 적용범위에 있어 종전 해석과 기준서 사이에는 '주식으로 차액을 보상하는 형태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분류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종전 해석에서는 회사의 종업원 등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교부형과 차액보상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주식으로 차액을 보상하는 형태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차액보상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기준서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현금결제형/선택형의 세 분류로 나누고 '주식으로 차액을 보상하는 형태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종전 해석에 의거 내재가치로 처리하던 것을 기준서에 의거 공정가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기준서에서는 종전 해석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종업원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4, B49)'와 '회사의 주주가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경우(문단 4)'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제도의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3. 가득조건

기준서에서는 종전 해석의 약정용역제공기간 외에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가득조건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당해 용역을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용역제공조건 : 종업원이 일정 기간(예 : 3년)동안 근로 용역을 제공하여야만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 ② 비시장성과조건 : 종업원에게 회사 지분상품의 시장가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과(예 : 목표 이익, 목표 판매량, 목표 매출액 등)를 달성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 ③ 시장성과조건 : 종업원에게 회사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과 관련된 일정한 성과(예 : 목표 주가)를 달성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4.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① 보상원가의 기간별 인식방법

기준서에서 가득기간을 용역조건/비시장성과조건/시장성과조건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원가도 각 조건별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성과조건인 경우 각 성과의 달성 여부에 따라 향후 인식될 보상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비시장성과조건인 경우 가득기간의 추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성과조건인 경우 추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회사 임원에게 특정 목표이익을 근거(비시장성과조건)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대가득기간(예 : 3년)을 추정하고 추정된 기대가득기간을 근거로 하여 총보상비용을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최초에 예상하였던 기대가득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예 : 5년)이 흘러서야 특정 목표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대가득기간을 변경하여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반면, 회사가 회사 임원에게 특정 주기수준을 근거(시장성과조건)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최초에 가장 합리적인 기대가득기간을 정하여 보상원가를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되 향후 기대가득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가득조건외 고려방법

기준서에서는 가득조건외 고려방법에 있어서도 조건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용역제공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가득조건외 성취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을 추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시장성과조건인 경우에는 가득조건외 성취여부를 고려하여 부여일 현재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성과조건(예 : 목표 주가)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은 이미 부여일 현재 이항옵션모형 등을 이용하여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였으므로, 회사가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또 실제 결과도 동일하다면 그러한 시장성과조건외의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원가를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③ 조건변경

기준서에 의하면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조건이 변경된다 고 하더라도 본래의 계약에 의해 인식해야 할 보상원가는 당초의 가득기간에 걸쳐 계속 인식하여야 한다.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증분공정가치는 아래와 같이 측정한다.

$$\text{증분공정가치} = \text{㉠} - \text{㉡}$$

- ㉠ 조건변경 직후에 측정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 ㉡ 조건변경 직전에 측정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만일 가득기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조건 변경일부터 변경된 가득일까지 보상원가를 인식할 때 그 측정치에

외계실무해설

증분공정가치를 포함시켜 인식하고 가득일 이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기준서에서는 조건 변경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경우 증분공정가치는 없고 본래의 계약에 의해 인식해야 할 보상원가만 인식하면 된다.

④ 취소/중도청산

기준서에서는 가득기간 중에 지분상품을 중도 청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ㄱ. 중도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에 잔여보상원가는 중도청산일에 모두 가득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가득기간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기록될 자본조정(주식선택권)이 중도청산일 현재 재무제표에 전액 기록되게 된다.
- ㄴ. 중도청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상품(예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기인식된 주식선택권을 자본조정에서 차감하도록 하되, 지급액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상황1) 청산금액이 자본조정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 변	대 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XXX(a)	현금(중도청산금액) XXX(b)
	기타자본잉여금(a-b)

(상황2) 청산금액이 자본조정금액보다 크고 중도청산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이내인 경우

차 변	대 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XXX(a)	현금(중도청산금액) XXX(b)
기타자본잉여금 ¹⁾	
자본조정 ²⁾	

- 1) 중도청산금액이 주식선택권을 초과하는 금액(a-b)은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기타자본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차감함.
- 2) 초과액(a-b)에서 기타자본잉여금을 차감조정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함.

(상황3) 청산금액이 자본조정금액보다 크고 중도청산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차 변	대 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XXX	현금(중도청산금액) XXX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주식보상비용 ³⁾	

- 3) (상황 2)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중도청산금액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기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함.

- ㄷ. 종업원에게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상품의 부여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4.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전 해석에서는 차액보상형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보상원가는 부여일부터 권리행사일까지의 매 대차대조

표일 현재 내재가치로 측정하도록 했던 것을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보상원가가 대차대조표에 인식한 자산(예 :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었다라도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맞추어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기준서에서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종전 해석과 마찬가지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부채를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5.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종전 해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서 종전 해석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부채(장기미지급비용)를 인식하도록 했으나 기준서에서는 주식선택권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눈 복합금융상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 = (㉠+㉡)

- ㉠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 요구권)의 공정가치
- ㉡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주식결제 요구권)의 공정가치

기준서에서는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채요소에 대해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원가와 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요소에 대해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회사에 결제선택권이 있는 경우는 현금지급의무가 있을 때는 부채로 인식하고 현금지급의무가 없을 때는 자본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마치며

이상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의 주요 차이점 및 새로이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식기준보상' 기준서는 2006년 12월 31일이 종료하는 사업연도(2007년)부터 적용하고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기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 경우 회계정책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합의된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하여 시행일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조건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취소 또는 중도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변경 등에 대해 기준서의 내용을 적용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준서에서는 종전 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조건 변경에 따른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신규상장회사의 경우 과거 시계열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기대주가 변동성을 계산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식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 계산을 강제하고 있으며 성과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기대행사기간의 예측에 많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적용에 앞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